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An Analysis of Policies on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Provincial Archives in the U. S., Canada, and Australia

김 지 현 (Jihyu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1 민간기록물의 유형 및 수집기준 |
| 2.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 3.2 수집방법 |
| 2.1 민간기록물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 3.3 저작권 관련 규정 |
| 2.2 민간기록물의 수집 | 3.4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규정 |
| 3. 해외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주립기록관,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기증, 위탁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olicies and guid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provincial archives in the U.S., Canada, and Austral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ng private records in the governmental archives. The analysis was made based on policies and guides from 14 state/provincial archives, including five in the US, seven in Canada, and two in Australia. From the analysis, the study examined collection areas, types of private records, and collecting methods, such as donation or deposit. It also studied the considerations on transferring copyright, placing access restrictions, and disposing of records.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collecting private records at public archives in Korea: (1) define the collecting areas of private records relevant to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 (2) determine the acquisition methods, including donation or deposit, and establish a procedure to make an agreement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including copyright, access restriction, and disposal of records; (3) develop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institutions within a region.

Keywords: state archives, provincial archives, private records, collection policy, donation, deposit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조교수(kim.jh@ewha.ac.kr)

■ 접수일: 2014년 7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2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3.105>>

1.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통해 생산, 수령된 기록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민간기록물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인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개정을 통해 민간기록물을 기록관리의 범주에 포함시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기반으로 민간 영역의 기록물 중 가치 있는 기록물을 지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홍보와 학술연구조사 및 민간의 수집 제보를 통한 중요한 민간기록물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이 2009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해 온 '내고장역사찾기' 사업에서는 5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 발굴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기록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우수사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도지정 기록물로 지정·관리하고 민간기록물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인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설치와 운영을 통해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강정만, 2012).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서울시에서는 서울

광장 조성 10주년과 서울기록관 건립을 기념하여 '서울광장 기록수집·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광장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과 행사에 대한 문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기록물을 콘텐츠화하여 일반대중에 공개할 계획에 있다(이정현, 2014). 이는 국가기록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민간기록물 수집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과 향후 설립될 서울기록관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인 민간기록물까지 관리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기록관의 문화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의 개념에 기반을 둔 마을 아카이브 논의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관 주도로 이루어진 국내 기록관리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 수집 필요성과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록관에서도 국가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의 발굴과 수집을 업무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인 민간기록물의 발굴과 수집에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등 지역 내 공공기록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공공기록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해외 공공기록관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이 정책이나 지침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어권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의 지방자치 행정구역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주(state, province) 또는 준주(territory)에 설립된 주립기록관 웹사이트를 통해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이나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과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이 그러한 정책이나 안내를 제시하고 있었고, 복수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였다.

2.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2.1 민간기록물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민간기록물(private archives)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부서와 같은 공공영역 이외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을 말한다. 이러한 비정부기록물(non-governmental archives)은 개인, 가족, 비영리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또는 사회운동이나 일회성 행사 등 비공식적인 활동에서 생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뉴스크립트(manuscripts)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

지만 민간기록물이라는 용어가 메뉴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록물과 비텍스트 기록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다.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구분에 있어 둘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완벽한 구분이 사실상 어렵지만 이러한 한계에 유념한다면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구분은 여전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Fisher, 2009).

Craig(2004)는 공공기록관에서 민간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록물을 수집하는 활동이 이미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러한 경험이 문헌에 잘 나타나있거나 이론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p. 157). 마찬가지로 Pollard(1994)는 공공기록물 평가이론은 잘 정립된 데 비해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의 수집 및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넄스의 이론이 개인기록물 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의 의의를 살피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 기록관에서 수용할 것을 제안한 McKemmish(1996)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기록을 생산, 수집, 관리하는 행위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록관리의 지식이 개인기록물 관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조직 내의 중요한 기능과 활동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물을 활동의 증거로 수집하는 것처럼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식별하고 이를 반영하는 기록물을 수집함으로써 “evidence of me”, 다시 말해 개인의 삶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물을 통해 개인과 여러 타인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행동하고 소통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공공기록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의 방식이 개인기록물의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McKemmish의 주장에 비판을 제기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Harris(2001)는 McKemmish의 주장이 신뢰성 있는 증거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인이 기록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역학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Hobbs(2001)는 개인기록물에 나타나는 개인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증거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공식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며 McKemmish의 주장은 좀 더 내밀한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기록물의 평가에 있어 기존의 공공기록물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특유한(idiosyncratic) 삶의 관점을 반영하는 수집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isher(2009)는 웰렌버그와 켄킨슨이 제시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기록물을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들 이론가의 논의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의 생산주체는 개인, 가족 및 비공식적인 단체이며 이들이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생산한 기록물을 민간기록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록물을 공공기록관에서 수집할 경우 기록물의 소유권은 공공기록관으로 이전되

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목적은 기록물이 가지는 정보적 가치 때문이며 웰렌버그와 켄킨슨은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증거적 가치가 민간기록물에는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Fisher는 이러한 주장이 민간기록물은 정보적 가치나 문화유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공공기록물은 증거적 가치나 설명책임성을 지원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토탈 아카이브즈(total archives)' 전통에 기반을 두어 공공기록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의 수집에도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치의 구분은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통합적인 수집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캐나다국립도서관(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이하 LAC)의 경우 민간기록물 수집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가치(heritage value)'라는 용어를 기록물 수집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2 민간기록물의 수집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해외 연구로서 LAC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기록물 수집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다. Cumming(1994)은 LAC의 민간기록물 수집전략(Private Sector Acquisition Strategy for Private Fonds)을 소개하고 있다. 효과적인 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타 기록관과

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재정과 인력 등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수집정책과 전략 수립이 요청됨을 강조하였다. 이후 Momryk(2001)은 ‘국가적인 중요성(national significance)’을 가지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한다는 목적을 지닌 LAC의 민간기록물 수집전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하였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토털 아카이브즈 개념에 바탕을 둔 포괄적인 민간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졌으나 1987년 캐나다국립기록관법(National Archives of Canada Act)이 제정되면서 전략 및 정책에 기반을 둔 수집 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적인 중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는 대신 이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록물 수집방안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민성혜(2012)는 기초자치단체인 광명시의 민간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명시기록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많은 양의 민간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라는 민관기업 거버넌스 기구의 소통 구조를 참고하여 구성원들에게 기록물의 가치를 알리고 수집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록물관리협의회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윤영(2011)은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기록물을 수집하는 주체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조사하였는데 공공영역의 기관으로는 행정기관(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문화원, 박물관(시립박물관 및 전문박물관)을, 민간영역의 기관으로는 교육기관(대학기록관), 사회단체, 경제단체, 언론기관을 제시하였다. 이들 기관들 간에 지방기록물수집협의체를 구성하고 온라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지방기록물의 협력적 수집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기록물 관리 중에서도 지역축제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지역축제가 문화적·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행사이므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문지희, 장우권(2014)은 남원 춘향제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으로 민관협력체계의 부재와 춘향제전위원회 회의의 한시성, 축제기록물 관련 규정, 기록관리 인력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관리조직위원회의 구성과 보존시설 마련, 전시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였다. 김채련(2010)은 함평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지역축제기록물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진아(2013)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지역 축제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을 제도적 개선과 절차적 개선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절차적 개선의 경우 표준을 활용한 기록관리체계 구축과 수집된 기록물의 전시, 출판, 아카이브 2.0 구축 등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민간기록물 수집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3. 해외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립기

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수집정책과 기준 또는 위탁 안내를 통해 해외 주립기록관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 절차와 실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은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주립기록관과 각 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이나 안내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각기 다른 기록관리 전통 속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 역시 국가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공공

<표 1> 조사대상 주립기록관과 분석 내용

국가	기록관명	수집정책 내 민간 기록물 관련 내용	독립적인 민간 기록물 수집정책	기준 안내	위탁 안내
미국	뉴저지 주립기록관 (New Jersey State Archives)	●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South Dakota State Archives)	●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기록관 (West Virginia State Archives)	●			
	코네티컷 주립기록관 (Connecticut State Archives)	●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State Archives of Florida)	●		●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립기록관 (Nova Scotia Archives)	●			
	노스웨스트 준주 기록관 (Northwest Territory Archives)			●	
	매니토바 주립기록관 (Archives of Manitoba)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립기록관 (British Columbia Archives)			●	
	앨버타 주립기록관 (Provincial Archives of Alberta)			●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Archives of Ontario)			●	
호주	사스캐치원 주립기록관 (Saskatchewan Archives)			●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Tasmania Archives and Heritage Office, TAHO)		●	●	●
	노던 준주 기록관 (Northern Territory Archives Service)	●		●	

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어느 기관이 수집하여 보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기록관리는 역사 메뉴스크립트 전통(historical manuscript tradition)과 공공기록물 전통(public records tradition)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역사학회(historical society)를 중심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과 함께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책임을 공유해 왔다. 이와 관련된 초기의 활동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역사학회와 도서관에서 개인 수집가들이 모은 공공 및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수집가들은 기록물의 수집뿐만 아니라 편찬 작업을 중요시하였고 이는 역사 메뉴스크립트 전통으로 이어져 20세기 미국의 기록관리 실무를 수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미국 최초의 역사학회인 매사추세츠 역사학회가 1792년에 설립된 이후 60여 년에 걸쳐 주립 또는 국립기록관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200개 이상의 역사학회가 설립되어 기록물 수집과 보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Berner, 1983, pp. 11-12). 이 중에서 몇몇 역사학회는 공공기록물 수집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었는데, 예를 들어 1854년에 설립된 위스콘신 역사학회는 1907년 주정부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식적인 기록관이 되었다.

미국 주립기록관의 설립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 산하 기관으로 주립기록관이 설립되기도 하고 주립도서관의 한 부서로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그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학회 내에 주립기록관이 존재하거나 주립 역사위원회(historical commissions)의 산하 기관

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립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만을 수집하는 주립기록관이 있는 반면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함께 수집하는 주립기록관도 존재한다(Posner, 1964, p. 30).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 보존의 전통이 분리되어 시작된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함께 수집·보존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이는 캐나다 기록관리 전통으로써 '토탈 아카이브즈(total archives)'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토탈 아카이브즈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영유지배권 내에 있는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한다는 관점 하에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메뉴스크립트, 지도, 사진, 녹음기록, 동영상 등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기록물을 수집하며, 같은 원 자료에서 생성된 기록물들은 모두 수집한다. 셋째, 인간 활동의 모든 주제를 반영하는 기록물을 망라하여야 한다. 넷째,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기록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 아카이브가 관여해야 한다(Smith, 1986, p. 341). 이와 함께 Cook(1979)은 토탈 아카이브즈의 다섯 번째 측면으로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기록관과 교회, 노동계, 산업계,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프로그램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록물을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Cook(1997)은 토탈 아카이브즈 개념을 기반으로 캐나다에서는 공공기관 업무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공공기록관의 공식적인 임무와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적 역할의 통합을 추구하

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더 나아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정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의 기능과 활동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토탈 아카이브즈 개념은 캐나다 주립기록관의 기록물 수집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Chong(1993)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주립기록관에서는 업무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보다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수집하는 문화적 역할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기록물 처분 지침 등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실무를 수립하면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 수집을 함께 수행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포괄적 수집을 강조하는 토탈 아카이브즈의 첫 번째 측면과 연결되며 캐나다의 역사를 반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토탈 아카이브즈의 두 번째 측면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있어 공공기록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주로 국립도서관이나 주립도서관 또는 대학기록관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을 담당하여 왔다. 호주의 공공기록관은 대다수 정부 연구도서관 부속기관으로 시작하였으며 역사학자들의 지지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몇몇 사서들의 노력으로 그 기반을 구축하였다. 호주 국립기록관의 경우 'Archives Act, 1983'의 제정 이후에도 자원 부족과 타성에 젖은 업무 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추구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주립기록관의 경우에도 재정지원

부족과 기록관에 대한 일반대중의 낮은 인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록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주정부의 설명책임성을 지원하고 문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Cunningham, 2005).

〈표 1〉에서 제시된 분석대상 기관들을 살펴보면 미국 전체 주립기록관 50곳 중에서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정책 내에 민간기록물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5개 기관이므로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책을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10개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에 주립기록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중 7개 주립기록관이 민간기록물 관련 정책 또는 기증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6개 주와 2개 준주에 주립기록관이 존재하며 이 중 2개 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련 정책과 안내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독립적인 민간기록물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 기증 안내와 위탁 안내도 제공하고 있어 민간기록물 수집에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사이트에서 민간기록물 관련 정책과 기증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기록관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기록관과 호주 노던 준주 기록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간기록물 정책과 기증 또는 위탁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요소를 (1) 민간기록물의 유형 및 수집기준; (2) 수집방법; (3) 저작권 관련 규정; (4)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규정의 4가지로 조사하였다.

3.1 민간기록물의 유형 및 수집기준

해외 주립기록관에서는 정책과 기준 안내를 통해 다양한 민간기록물의 유형을 수집하고 있었다. <표 2>에서는 두 개 기관 이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유형을 정리하였는데 다수의 기록관에서 제시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은 사진, 지도, 일기, 서한 및 건축기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름이나 비디오, 오디오 등의 시청각기록물도 자주 언급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이었으며 박물관이나 회고록을 수집 유형에 제시하는 기록관도 있었다.

캐나다 앨버타, 사스캐치원 주립기록관과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및 노던 준주 기록관에서는 개인기록물과 기관기록물을 구분하

여 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기관기록물의 경우 회의록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록물의 유형이었으며 정책파일, 법적문서 및 재무 관련 문서, 조직원명부 등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 한 기관에서만 언급되어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장부, 보고서, 스케치북, 포스터, 시, 출판물, 구술녹음기록 및 녹취록, 디지털자료도 민간기록물 수집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함께 수집하는 기록물의 가치나 주제에 기반을 두어 수집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주립기록관은 모두 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수집기준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다양한 수집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대다수의 기록관에서 동의

<표 2> 민간기록물의 유형

기관 \ 유형	미국			캐나다				호주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앨버타	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캐치원	태즈메이니아	노던준주
사진	●	●		●	●	●		●	●
지도	●	●		●	●	●		●	
건축기록물		●		●	●	●	●		
일기			●	●		●	●	●	●
서한			●	●		●		●	●
필름 및 비디오				●	●	●		●	
오디오				●	●	●		●	
스크랩북				●					●
박물관					●	●			
회고록							●	●	
정책파일				●					●
회의록				●			●	●	●
법적동의서 법적문서				●					●
자산 및 재무 관련기록물				●			●		
조직원명부							●		●

〈표 3〉 민간기록물 수집기준

수집기준	기관	미국			캐나다			호주
		플로리다	코네티컷	뉴저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태즈메 이니아
지역의 정치·사회 경제·문화를 반영하는 증거적 가치를 담은 기록물		●			●	●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			●			●
유일성 등 고유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		●		●	●			
공무원/관료 기록물		●	●	●				
주립기록관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기록물		●	●					
군 서비스/참전용사 관련 기록물			●	●				
지역의 초창기 정착 및 개발 관련 기록물		●		●				
영향력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및 가족의 기록물							●	●

하는 수집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개 기관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수집기준으로 셀렌버그의 2차적 가치에 근거한 증거적 가치 또는 정보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록물, 유일성 등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그리고 주 정부 공무원이나 주지사,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의 개인 기록물이 포함된다. 증거적 가치를 반영하는 수집기준은 지역의 사회·정치·군사·경제 관련 기록물이나 지역 내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동향 또는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물로 제시되고 있다. 정보적 가치를 의미하는 수집기준은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활용도가 높고 새로운 역사 발굴에 기여하는 기록물, 커뮤니티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기록

물로 표현되고 있어 새로운 지식 창출로 이어지는 민간기록물의 이용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가치와 관련된 수집기준은 기록의 물리적 형태나 유일성 등 고유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 보물(treasure)이라고 여겨지는 기록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 정부 공무원이나 고위 관료의 개인 기록물을 민간기록물 수집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의 경우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과 관련된 공무원의 개인 기록물만을 수집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립기록관에서는 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전(前) 주지사의 기록물을 수집하며, 뉴저지 주립기록관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대 고위관료의 개인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

사적 시기 또는 기록관 소장기록물과의 관련성 등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관료의 개인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수집기준으로는 기록관의 소장기록물과 관련되는 기록물, 개인의 군 서비스 기록물 또는 참전용사 관련 기록물, 영향력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물, 지역의 초창기 정착이나 개발과 관련된 기록물이 있다.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수집기준으로 현재 주립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추가될 수 있는 기록물 또는 기록관 수집영역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다. 군 서비스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언급한 기록관 중 뉴저지 주립기록관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복무한 개인의 군 서비스에 관련된 기록물만을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정 시기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초창기 정착 및 개발 관련 기록물 중에서 뉴저지 주립기록관에서는 토지 거래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기는 하나 영향력 있는 개인 또는 가족 기록물을 수집기준으로 제시한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립기록관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는 개인 중에서 주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또는 지역 내에 거주했던 가족 중에서 그 활동이 주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가족의 기록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에서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을 수집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단일 기록관에서 명시하는 수집기준으로 주립병원의 의료

서비스 및 공공보건과 관련된 기록물, 지역의 초창기 교통 및 운수 관련 기록물, 지역 내 이익 집단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기록물, 그리고 주립도서관 기록물이 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관점의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집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해외 주립기록관의 수집기준을 통해 그 범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2 수집방법

조사대상인 해외 주립기록관은 모두 기증을 통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기증과 함께 위탁을 수집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Carroll(1987)에 따르면 기증은 기증자가 기록물에 대한 모든 물리적, 법적 소유권을 기록관으로 이전하는데 반해 위탁은 위탁자가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의 기증 안내 페이지에서도 기증을 할 경우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기록관으로 이전됨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기록관의 경우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해 지역역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사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수집방법으로 구입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에서는 구입을 위한 수집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직 기증을 통해서만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간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수집

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호주 태즈메이니아와 빅토리아 주립기록관을 들 수 있다.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의 경우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주립기록관의 책임사항을 민간기록물 수집정책에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즈메이니아의 문화 수집물 부문(Cultural Collections sector)에 속하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집 정책과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의 책임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태즈메이니아 문화 수집물 부문 포럼에 참여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수집 혹은 계획하고 있는 수집에 대한 정보를 타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립기록관의 경우 주 내에 위치한 역사학회, 박물관, 문화유산 센터 등과 연계하여 Place of Deposit(PO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에 의해 POD로 지정된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공공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주립기록관의 영구보존기록물 중 POD가 속한 지역과 관련된 기록물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POD가 주립기록관 대신 그 기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는 POD는 주립기록관에서 제시하는 엄

격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선정될 수 있다. 몇몇 POD는 공공기록물과 함께 해당 지역 내의 개인이나 기관에서 생산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POD는 빅토리아 주 역사를 보존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네트워크로서 주립기록관과 다양한 종류의 지역 유관 기관들 간 협력을 통한 민간기록물 수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4〉는 조사대상 주립기록관 중 8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증 또는 위탁에 대한 내용과 기증/위탁동의양식 제공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5개 기관이 기증 또는 위탁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만 위탁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기관은 기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증의 유익한 점은 4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기록관은 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주립기록관은 기증동의양식(deed of gift)을,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위탁동의양식(deposit agreement form)을 PDF 형식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먼저 기증절차는 (1) 아키비스트에게 기증 의사 전달; (2) 기록물 평가; (3) 기록물에 대

〈표 4〉 기증 및 위탁에 대한 규정과 양식 제공여부

	미국		캐나다				호주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앨버타	사스캐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태즈메이니아	노던준주
기증/위탁절차	●		●	●	●		●	
기증/위탁동의양식	●	●					●	
기증의 유익한 점	●		●			●		●
기증자 예우			●		●	●		

한 배경정보 제공: (4) 기증동의양식 작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민간기록물을 담당하는 아키비스트에게 연락을 취해 기증절차가 시작되면 기록물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의 방식은 기록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앨버타 주립기록관에서는 기록물의 양이 방대할 경우 아키비스트가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이 적을 경우 기증자가 직접 기록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스캐치원 주립기록관에서는 아키비스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니토바 주립기록관의 경우 기증된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집 위원회(acquisition committee)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기록관에서 승인한 후 수집을 확정짓게 된다.

기록물에 대한 배경정보로서 기록 생산자의 생몰년도와 혼인일자, 살았던 장소, 직업적 또는 개인적 관심사, 커뮤니티 참여 활동 또는 과제목이나 날짜 등을 기증자가 제공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기록물의 원질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기록관에서 기증된 기록물을 수집할 것을 승인하게 되면 기증동의양식에 기증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기증절차가 완료된다.

플로리다와 사우스다코타 주립기록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증동의양식의 요소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 기증자의 인적사항: (2) 기록물의 법적 소유권자 인적사항: (3) 기록물에 대한 기술: (4) 접근제한에 대한 의견: (5) 기록물 처분에 대한 의견: (6) 기증자와 담당 아키비스트의 서명 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우스다코타 주립기록관에서는 이에 덧붙여 (1) 기

록물 유형(정부기록물, 도서관 자료, 매뉴스크립트 중 택일): (2) 기록물생산자와 생산일자: (3) 소유자가 기록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기술하게 하고 있다. 기록물 처분에 대한 의견도 반환, 폐기, 기타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기타 의견은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기록물을 기증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익한 측면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이용자층과 후대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기증된 민간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주립기록관에서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 민간기록물이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 컬렉션으로 보존된다. 셋째, 도난, 손상, 유실로부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넷째, 국가 표준에 따라 기록물을 기술하고 기술된 결과물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제공된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서 기증에 대한 세금혜택과 기증자와 기증된 기록물에 대한 소개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에서는 기증된 기록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증에 대한 감사 및 사례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앨버타 주립기록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기증에 한해서 이를 발행해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에서는 개인과 기관 및 단체로 나누어 기증자의 성명 순으로 기증 시기와 기증한 기록물에 대한 설명을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면서 잠재적

기증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 외에 매니토바 주립기록관에 서도 최근 기증된 기록물의 제목을 제공하고 있고 기록관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조사대상 기관 중 기증과 위탁 두 가지 수집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웹사이트에서 제시되는 기증 안내는 기증받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기증의 유익한 점만을 간략히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위탁 안내는 기관과 개인/가족 기록물로 나누어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증 안내 페이지에서 위탁 안내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기록물 위탁 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탁절차 역시 앞서 제시된 타 주립기록관의 기증절차와 유사하게 민간기록물 수집 담당직원에게 기증의사를 밝힌 뒤 위탁동의양식을 작성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양식 역시 기증동의양식과 거의 비슷한 요소를 포함하여 (1) 위탁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2) 기록물에 대한 기술; (3) 출처 및 소장 이력; (4) 접근; (5) 저작권; (5) 처분(disposal)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위탁동의양식에서는 저작권의 소유 여부와 권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기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3 저작권 관련 규정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의 위탁동의

양식에 제시된 저작권 선택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 (1) 모든 위탁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이전; (2) 위탁자가 저작권 소유; (3) 저작권의 부분적 이전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저작권의 부분적 이전에 있어서는 (1)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본 제작; (2) 연구 목적의 사본 제작; (3) 홍보 목적의 사본 제작; (4) 필름이나 비디오에 한하여 대어를 위한 사본 제작; (5) 출판 목적의 사본 제작 중에서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출판 목적의 사본 제작의 경우 이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별도로 서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적인 선택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기록물 소유권자의 법적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기록물 활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립기록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비롯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과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기증을 권장하고 있다.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에서도 위탁보다는 기증을 장려하는 이유로 기증을 통해 소유권의 이전을 명확히 하고 기록물의 보관, 관리 및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기록생산자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록물 활용에 있어 너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록생산자가 개인이 아닌 기관이면서 이들이 반드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상호 동의하는 조건하에 기록물을 무기한 대여(an indefinite loan)

하는 것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보관비용과 기록물 복구에 대한 비용을 기관에 청구하는 것을 조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외에도 기록물 기증은 호주 국가 문화 기증 프로그램(the national Cultural Gifts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개인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이용할 경우 호주 과세 시스템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주립기록관 중에서도 매니토바 주립기록관은 원칙적으로 민간기록물의 저작권은 캐나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증 시 저작권을 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 기록관에서도 기증을 통해 소유권 전부가 기록관으로 이전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증동의양식에 서명을 함으로써 확정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에서도 기증동의양식에 서명을 하고 민간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저작권에 속한 모든 권리가 주립기록관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록관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민간기록물의 인용이나 출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3.4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규정

주립기록관에서는 민간기록물이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 접근제한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 플로리다 주립기록관과 캐나다 매니토바, 사스캐치원 주립기록관에서는 기

증자가 제시하는 접근제한에 반드시 만료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니토바 주립기록관에서는 접근제한이 만료될 시기에 대비하여 기록물에 대한 접근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스캐치원 주립기록관의 경우 접근제한이 허용되는 기간, 이용 및 소유권의 법적 이전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증동의양식에 명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접근제한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증되는 기록물 내에 민감한 개인적 내용이 담긴 기록물이 있는지, 개인의 건강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이 있는지 또는 현재 생존해 있는 개인이나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물인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위탁동의양식에서 접근제한과 관련된 선택 사항을 (1) 공개; (2) 25년이 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한 접근제한 제공; (3)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5년이 안 된 기록물에 대한 접근제한의 경우 특별히 문서로 된 허가가 있지 않는 한 25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증받은 민간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한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의 경우 처분 권한을 가지고 폐기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증자에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원하는 다른 처분 조치를 명시하게 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의 경우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증동의양식에 처분에 대한 조항을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런 조항이 없을 경우 주립

기록관 아키비스트의 재량에 의해 처리되나 처분을 목적으로 외부에 기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주립기록관 14곳에서 제시하는 민간기록물 수집관련 정책 및 안내의 내용을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수집기준, 수집방법, 저작권 관련 규정,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규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진, 지도, 건축기록물, 일기, 서한 등이 자주 언급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이었으며 수집기준으로는 지역의 사회·경제·정치·문화를 반영하고 증거적·정보적·역사적 가치를 내포하는 민간기록물이 주로 언급되었다. 수집방법으로는 대다수 주립기록관에서 기증을 통한 민간기록물 수집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록관에서 구입 또는 위탁을 통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간의 협력을 통한 수집이 또 다른 민간기록물 수집방안으로 강구되고 있었다.

저작권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기증을 통해 저작권을 포함한 소유권 전체의 이전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탁을 통한 민간기록물 수집의 경우 기록물 소유권자가 저작권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접근제한에 있어서는 접근제한의 만료기간을 정하거나 기록물의 연한에 제한을 두는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처분은 기증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존가치가 없는 기록물을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증동의양식에 별도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처분하기도 한다. 처분에 대하여 기재한 내용이 없을 경우 아키비스트의 재량에 의해

처분할 수 있으나 외부로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하는 기록관도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립기록관에서 제시하는 민간기록물 수집정책과 기준 및 위탁 안내를 바탕으로 공공 성격을 띤 해외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민간기록물 수집 업무와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각국의 기록관리 전통이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각 주립기록관이 설립된 배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민간기록물 수집이라는 문화적 역할을 수용하는 부분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절반 이상의 주립기록관이 토털 아카이브즈 전통을 기반으로 민간기록물 수집을 주립기록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기록관리와 민간기록관리 전통이 분리되어 있는 미국이나 호주의 주립기록관은 전체 주립기록관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주립기록관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을 공식적인 임무로서 제시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공공기록관리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업무가 이루어져왔고 해외 주립기록관과 같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내고장역사찾기' 사업이나 서울시 서울광장 수집사업과 같이 국내에서도 제한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을 중심으로 민간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공식적인 임무는 공공기관에

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관리이지만 지역 내 중요한 민간기록물의 수집으로 그 역할이 확장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본 연구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등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기록관에서는 체계적인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해 지역의 역사를 고려한 민간기록물 수집기준과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기존의 수집정책 내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공공의 성격을 띤 주립기록관의 특성상 민간기록물이 최우선의 수집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기록관의 문화적 역할을 반영하여 중요한 수집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해외 주립기록관에서는 중요한 사건 및 동향에 대한 증거적 가치와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적 가치, 물리적 형태나 유일성 등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각 기록관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주제영역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수집정책 내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공식화하고 각 주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고유성을 반영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공공기록관에서도 기록화가 요청되는 지역 내 사건이나 개인 및 기관의 활동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집기준과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민간기록물 수집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 수집 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 해외 주립기록관에서는 기증이 가장 일반적인 민간기록물 수집방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기록관만이 위탁 또는 구입을 수집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기증을 통해 민간기록물의 소유권 전체를 기록관으로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관의 입장에서는 기증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기록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우방안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는 기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기증자에 대한 소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기증에 대한 혜택 및 감사표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기록물을 기증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증자 예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증동의양식을 활용하여 모든 소유권을 기록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해외 국가들에 비해 기증이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위탁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수집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위탁을 통해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유도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기증에 비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의 사례에서처럼 부분적인 저작권 소유에 대한 선택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기록물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저작권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기록물 수집 사례에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더불어 민간기록물의 접근제한을 정의하는 부분 역시 국내에서는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해외 주립기록관에서는 기록

물의 연한에 제한을 두거나 접근제한의 만료시기를 지정하여 공개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접근 제한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서 적용한다면 기증자 혹은 위탁자에게 접근제한의 한시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기록관에서도 이러한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접근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처분에 대한 사항 역시 반환, 폐기 혹은 기타 방식으로 기증자 혹은 위탁자가 원하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근제한과 처분에 대한 사항도 기증/위탁동의양식에 포함하여 기증자 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내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적 수집에

대한 책임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등 타 문화유산기관의 수집정책을 참고하고 포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타 기관과 수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립기록관은 주 내에 위치한 여러 지역 기록관들을 Place of Deposit(POD)로 지정하여 이를 지역 내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행정기관, 도서관, 박물관, 사회단체, 문화원 등 다양한 민간기록물 관련 기구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을 담당해 온 기관이나 단체를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수집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의 중심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민간기록물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정만 (2012. 7. 19). 제주도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정부 우수사례 선정. 중앙일보, 검색일자: 2014. 7. 2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801622&ctg=1213
- 김채련 (2010). 지역축제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함평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 문지희, 장우권 (2014). 남원 춘향제 기록물의 관리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397-420.
- 민성혜 (2012). 광명시의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협의회 설립 방안 연구: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운영 (2011). 지역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기록물의 수집 협력체계 구축 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정현 (2014. 4. 13). '대한민국 정치·문화 중심지' 서울광장 70년史. 연합뉴스, 검색일자: 2014. 7. 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1/0200000000AKR20140411083400004.HTML>

- 이진아 (2013). 부산지역 축제기록 관리와 활용방안: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Berner, R. C. (1983).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analysi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arroll, C. V. (1987). From deposit to donation: The National Archives' acquisitions strategy for papers of cabinet ministers. *Archivaria*, 25, 29-43.
- Chong, B. W. (1993). *Conceiving local archival institutions: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rchival programs in Richmond and Delt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Cook, T. (1979). The tyranny of the medium: A comment on "Total Archives." *Archivaria*, 9, 141-149.
- Cook, T.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rchivaria*, 43, 17-63.
- Craig, B. (2004). *Archival appraisal: Theory and practice*. Walter de Gruyter.
- Cumming, J. (1994). Beyond intrinsic value towards the development of acquisition strategies in the private sector: The experience of the manuscript division,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rchivaria*, 38, 232-239.
- Cunningham, A. (2004). Archival institutions. In: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Elsevier, 21-50.
- Fisher, R. (2009). In search of a theory of private archives: The foundational writings of Jenkinson and Schellenberg revisited. *Archivaria*, 67, 1-24.
- Harris, V. (2001). On the back of a tiger: Deconstructive possibilities in 'Evidence of Me'. *Archives and Manuscripts*, 29(1), 8-21.
- Hobbs, C.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 Reflections on the value of records of individuals. *Archivaria*, 52, 126-135.
- McKemmish, S. (1996). Evidence of me.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5(3), 174-187.
- Momryk, M. (2001). "National Significance":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acquisition strategies in the manuscript division,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rchivaria*, 52, 151-174.
- Pollard, R. A. (2001). The appraisal of personal papers: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rchivaria*, 52, 136-150.
- Posner, E. (1964). *American state arch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W. I. (1987). *Total Archives: The Canadian experience*. *Archives et bibliothèques de Belgique*. Quoted in Chong, B. W. (1993). *Conceiving local archival institutions*, 1.

[웹사이트]

- Archives of Manitoba (2014). Donating Records to the Archives of Manitoba.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gov.mb.ca/chc/archives/donate/index.html>
- Archives of Ontario (2011). Donating to the Archives of Ontario.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archives.gov.on.ca/en/donating/index.aspx>
- British Columbia Archives (2014). Donating Records. Retrieved 2014.8.29, from <http://royalbcmuseum.bc.ca/archives-visitors/donating/>
- Connecticut State Archives (2011). Collection Policy For The State Archives in the Connecticut State Library.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ctstatelibrary.org/pages/collection-policy-state-archives-con>
- New Jersey State Archives (2011). New Jersey State Archives Collection Policy.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nj.gov/state/archives/collecting-policy.html>
- Northern Territory Archives Services (2009). Acquisition Policy for Community Archives.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artsandmuseums.nt.gov.au/_data/assets/pdf_file/0008/5993/acquisition_policy.pdf
- Northern Territory Archives Services (2014). Donating Community Archives.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artsandmuseums.nt.gov.au/ntas/donating>
- Northwest Territories Archives (2009). Information for Donors.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pwnhc.ca/programs/archives/info_for_donors.asp
- Nova Scotia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004). Archival Acquisition Policy. Retrieved 2014.8.29, from <http://novascotia.ca/archives/about/policies/acquisition.pdf>
- Provincial Archives of Alberta (2012). Donating Your Records. Retrieved 2014.8.29, from <http://culture.alberta.ca/paa/donating.aspx>
- Saskatchewan Archives (2011). Donating Records.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saskarchives.com/donating-records>
- South Dakota State Historical Society (2010). Archives Collection Policy. Retrieved 2014.8.29, from <http://history.sd.gov/Archives/Data/About/collectionpolicy.aspx>
- State Archives of Florida (2013).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Retrieved 2014.8.29, from <http://dhis.dos.state.fl.us/archives/collectionPolicy.cfm>
- Tasmanian Archive and Heritage Office (2014). Depositing Records of Organisations with the Tasmanian Archive and Heritage Office.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linc.tas.gov.au/global/aboutlinc/contributing/organisationalrecords>

- Tasmanian Archive and Heritage Office (2014). Depositing your personal or family Papers in the Tasmanian Archive and Heritage Office.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linc.tas.gov.au/global/aboutlinc/contributing/privatepapers>
- Tasmanian Archive and Heritage Office (2014). Donating to the Tasmanian Archive and Heritage Office.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linc.tas.gov.au/global/aboutlinc/contributing/heritagedonations>
- Tasmanian Archive and Heritage Office (2014). Private records collection policy.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linc.tas.gov.au/global/aboutlinc/information/policiesplans/privaterecords>
- West Virginia State Archives (2014). West Virginia Archives and Histo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State Archives. Retrieved 2014.8.29, from <http://www.wvculture.org/history/sacollectionpolicy.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Jeong-Man (2012. 7. 19). Private records management of Jeju province selected as best practices by the government. Korea Joongang daily. Retrieved July 28, 2014, from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801622&ctg=1213
- Kim, Chae-Ryeon (2010).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local festivals: With a case of Hampyeong county.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Graduate School,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Program.
- Lee, Jeong-Hyeon (2014. 4. 13). 70 year-history of Seoul Plaza as the center of politics and culture in Republic of Korea. Yonhap News. Retrieved July 28, 2014,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1/0200000000AKR20140411083400004.HTML>
- Lee, Jin-A (2013). The study on managing and using records of local festivals in Busan.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Min, Seong-Hye (2012). A study on a method to establish the local archives management council in the Gwangmyeong City: focusing on the Council of Green Gwangmyeong 21.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tudies.

Mun, Ji-Hui & Chang, Woo-Kwon (2014).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Chunhyang festiv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397-420.

Yi, Yoonyoung (2011). A study on building an acquisition cooperative system of local historical records for settlement of local records culture: focusing on Ulsa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tudies.